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오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54

발의연월일: 2020. 8. 6.

발 의 자:조오섭·김원이·임호선

천준호 · 서영석 · 윤준병

양향자 • 문진석 • 송갑석

윤영덕·강득구·안민석

오기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, 시행자, 시행기간, 시행방식, 설계도서, 자금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데, 이는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·의무관계에 매우 밀접한사항임.

그런데 실시계획의 작성·인가 후에 실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안과정에서 해당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적 제도장치가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민의가 수렴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) ① 시행자(지정권자 가 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)는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개 정 안 제17조의2(실시계획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) ① 시행자(지정 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)는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인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하며,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
	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